

사업자등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서약서 (임대사업자용)

성 명		생 년 월 일	
연 락 처		전 자 우 편	
주 소			
사 업 장 명		사업자등록번호	
사업장 소재지			
임대부동산명			
개업년월일		월 임대 소득	원
확 인 사 항	사업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업무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가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사업장에 고용한 직원이 있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
- 위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/육아휴직/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급여 신청 대상기간 중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의 기준*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- 향후 출산전후휴가/육아휴직/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급여신청시 고용보험법 제 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급여 신청서에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, 미기재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(지원금 환수, 부정수급 처분 등)에 대해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

(서명 또는 인)

*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(단, 임대사업자 중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업무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)